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66

발의연월일: 2024. 6. 28.

발 의 자:김용민·어기구·박지원

정진욱 • 한준호 • 임오경

민형배 · 장경태 · 전용기

김남희 · 임미애 · 김한규

김용만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 제33조에 따르면 '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·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.'라고 되어 있음. 노동 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임.

하지만 현행법은 '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.'라고 되어 있어 헌법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단결권 등 헌법이 정한 구체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.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법률로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. 또한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측의 전략적 봉쇄소송 등 손해배상 청구로 단체행동권이실질적으로 침해·제한되는 발생을 막아야 함.

이에 쟁의행위가 목적·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하고, 손해배상 청구 남용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

임(안 제37조).

법률 제 호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1항 중 "法令 기타 社會秩序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"를 "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37條(爭議行爲의 기본원칙) ①	第37條(爭議行爲의 기본원칙) ①
爭議行為는 ユ 目的・방법 및	
節次에 있어서 法令 기타 社會	<u>법률을 위반하지</u>
秩序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.	않는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
	<u>다</u> 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	<u><삭 제></u>
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	
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	
<u>니 된다.</u>	